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7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관련법령과 상치된 조문을 정정하고,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재원중 “기타 보조금 및 용자상환금”을 “기타수입금”로 변경함으로써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제3호)
- 나.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제5항)
- 다.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바르게 정하고, 회계 관계서류를 별도 관리토록 정함. (안 제4조)
- 라. 기금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규정(위원회의설치 및 구성, 기금운용의 계획, 기금결산등)을 보완함 (안 제16조 내지 제22조)

개정 조례안 — 별 첨

신구조문 대비표 — 별 첨

관계 법령 발췌서 — 별 첨

참고 사항 —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중 “기금의 조성”을 “기금의 재원”으로하고,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3.기타수입금

제3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이하“금융기관”이라한다)에 예치·관리한다

④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③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시설공사 완공후 소정의 절차(도시가스사의 자체검사 입회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완공증빙서 제출)를 거쳐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

제11조제3항중 “안산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경제통상국장
2. 기금출납원 : 에너지업무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,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
④위원은 기획실장, 복지환경국장, 도시계획국장, 건설교통국장,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, 관련분야에 종사자로서 기금의 조성·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7조(심의회 의 기능) ①심의회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2. 기금결산보고서안
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에너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 1~2 (생략) 3. <u>기타보조금 및 융자상환금</u></p>	<p>제2조(기금의 <u>재원</u>)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3. <u>기타수입금</u></p>
<p>제3조(기금의 관리) ①<u>기금은 안산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이 관리 하되, 도시가스 사업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 ②~③ (생략) ④<u>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관리) ①<u>시장은 기금을 시급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이하"금융기관"이라 한다)에 예치관리한다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<u>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</u></p>
<p>제8조(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) ①(생략) ②<u>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심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</u> ③<u>제1항에 의해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시설검사의 공정단계별로 소정의 절차(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필증 제출)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) ①(현행과 같음) ②(삭제) ③<u>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시설공사 완공후 소정의 절차(도시가스사의 자체검사 입회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완공증빙서 제출)를 거쳐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0조(추가융자) <u>금융기관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융자할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기금의상환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안산시장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을 용자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</p> <p>1호~ 4호(생략)</p> <p>제14조(기금관리공무원) <u>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11조(기금의상환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호~ 4호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회계공무원) ①<u>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</u></p> <p>1. <u>기금운용관 : 경제통상국장</u></p> <p>2. <u>기금출납원 : 에너지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②<u>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<u>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<u>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u></p> <p>③<u>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④위원은 <u>기획실장, 복지환경국장, 도시 계획국장, 건설교통국장,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, 관련분야에 종사자로서 기금의 조성·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</u></p> <p>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임명된 <u>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.</u></p> <p>제17조(심의회의 기능) ①<u>심의회는 도시가 스수요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기금운용계획안</u> 2. <u>기금결산보고서안</u> 3. <u>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 <p>②<u>심의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<p><신설></p>	<p>제18조(위원장의 직무) ①<u>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</u></p> <p>②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p>제19조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</p> <p>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에너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신설>	<p>제2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신설>	<p>제21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계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23조(시행규칙) ----- -----</p>